

안전관리위원회규정

제정	2007. 4.
개정	2007. 9.
개정	2013. 5.
개정	2015. 9.

제1조 (명칭) 이 위원회는 우송대학교(이하 “본 대학”이라 한다) 안전관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라 한다.

제2조 (목적) 이 규정은 우송대학교(이하 “본 대학”이라 한다)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연구와 실험에 관련된 연구 활동 종사자의 안전 확보 및 실험실 사고 피해에 대한 보상을 통하여 과학기술연구.개발 활동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 (위치) 위원회의 사무소는 본 대학교 내에 둔다.

제4조 (설치) 본교의 모든 안전관리에 관한 정책결정과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우송대학교 안전관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함)를 둔다.

제5조 (구성 및 운영)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행정부 총장이 되고, 총무처장, 기획처장, 교무처장, 학생복지처장, 산학협력단장, 입학처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, 이외에 다음 각 목의 해당자 중에 총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.(개정 2015.09.07.)

가. 연구실 안전환경 관리자

나. 연구실 책임자

다. 연구실 안전담당자

라. 연구활동종사자(신설 2015.09.07.)

②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은 그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며, 연구실책임자, 연구활동종사자인 위원은 그 신분이 변경될 경우에는 위원의 직에서 해직되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(신설 2015.09.07.)

제6조 (임무) 위원회는 다음 각 호를 심의 의결한다.

1. 안전관리규정의 개.폐에 관한 사항
2. 연구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책의 수립 및 시행
3. 안전교육 및 훈련, 안전점검 및 지침서에 관한 사항
4. 안전관리 실무위원회의 설치가 요구되는 부서의 지정
5. 중대한 안전사고의 처리에 관한 사항
6. 교내 안전에 관한 연례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
7. 연구실안전관리운영에 따른 예산확보
8. 기타 「연구실안전 환경조성에 관한 법률」에서 정하는 사항

- 제7조 (소집 및 의결)**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.
-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③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 등 회의결과를 게시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신속하게 알려주어야 한다.
- ④위원회에는 간사를 두며, 간사는 회무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한다.
- ⑤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제8조 (사고대책위원회의 구성) 위원장은 교내 중대한 안전사고발생시 위원회를 사고대책위원회로 전환하고 사고와 관련된 해당부서의 소속부서장을 포함하여 사고의 원인 및 책임소재 등 제반사항을 조사하여 사후대책을 수립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5년 9월 7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(적용의 특례) 이 규정은 2015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.